

제26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현 아  
(새정치민주연합, 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현아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모두 마흔 명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이나 단체 혹은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중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시행중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재정적 효율성을 위해 시작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최근에는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는 이유로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사무들이 민간위탁으로 시행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수탁기관의 관료화 등  
여러 제반 역기능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범위를  
기존의 신규사무는 물론이고  
재위탁과 재계약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는  
서울시의 무분별한 민간위탁 관행에 대한 견제와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